

의안번호	제 30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7. 9. 4 .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7. 8. 28 .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일자 : '97. 8. 24

제 출 자 : 사천시장

1. 제안이유

- 민법부칙 제3조제4항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 공무소에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과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읍·면·동·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함으로서
- 확정일자 부여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코자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징수 요율표중 구분란의 6.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증명 및 열람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하고자함

3. 법적근거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97.8. 내무부)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구분란중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에 “(5)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를, 기준란중 “1건”을, 요액란중 “600원”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제중명동 수수료 요율표		제중명동 수수료 요율표		제중명동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치분 또는 구역내의 시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건 600원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신설)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치분 또는 구역내의 시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건 600원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5)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